

서울특별시

우편번호: 100-74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(02)3707-9793/4 / 전송 3707-9809
 처리부서: 주차계획과(서소문별관 제1동 2층) 과장 이종기, 담당사무관 이성배, 담당 신만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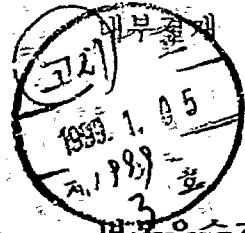
문서번호: 주차 91115-2K

시행일자: 1998. 12. 05

(경유) (제 1 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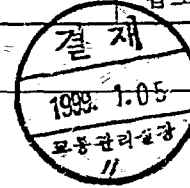
수신

참조



취급		시 장
보존		나 동 등
교통관리실장	전결	
주차계획과장	이종기	법무담당관
기안	신 만 철	민영주차장담당사무관 0748117
		협조

제목: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



1. 국유하이패 제97-070호('97. 6. 2)와 관련입니다.

2. 우리시에서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하고 있는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자인 (주)대우로부터 설계변경요청이 있어 내용검토후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자 합니다.

가. 사업개요

- 사업명: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공사
- 위치: 중랑구 면목동 168-2번지(공사면적 48,918㎡)

나. 변경내용

구 분	당 초	변 경	비 고
복개면적	48,918㎡	59,665.5㎡	증) 10,747.5
주차대수	1,262대	1,066대	감) 196
부대시설면적 (비율)	960.06㎡ (1.96%)	9,522.54㎡ (15.95%)	증) 8,562.48

원본
1998. 12. 05

다. 변경사유

○ '96. 6.29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면적이 10%이하에서 20%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내에서 부대시설비율을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변경함.

라. 변경인가 조건

- 부대시설의 증가에 따라 무상사용기간은 검토하여 추후 결정통지

○ 소방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해당 소방시설은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, 소방시설의 시공·감리는 동법시행령 제40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 67조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, 적용한 소방시설 등 허가사항을 변경시에는 재협의토 록 함.

○ 기타 인가조건은 변동사항 없음. 끝.

(제 2 안)

수 신 : (주)대우 대표이사 강병호 귀하

제 목 :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

1. 국유하이퍼 제97-070호('97. 6. 2)와 관련입니다.

2. 귀사에서 추진중인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과 관련한 설계변경요청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하니,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.

가. 변경내용

1999. 1. 05
포항공관리인장

구 분	당 초	변 경	비 고
복개면적	48,918㎡	59,665.5㎡	증) 10,747.5
주차대수	1,262대	1,066대	감) 196
부대시설면적 (비율)	960.06㎡ (1.96%)	9,522.54㎡ (15.95%)	증) 8,562.48

나. 변경사유

○ '96. 6.29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면적 이 10%이하에서 20%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내에서 부대시설비율을 확 대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변경함.

다. 변경인가 조건

○ 부대시설의 증가에 따라 무상사용기간은 검토하여 추후 결정통지
○ 소방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해당 소방시설은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, 소방시설의 시공·감리는 동법시행령 제40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 67조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, 적용한 소방시설 등 허가사항을 변경시에는 재협의토 록 함.

○ 기타 인가조건은 변동사항 없음. 끝.

서울특별시

(제 3 안)

수 신 : 수진처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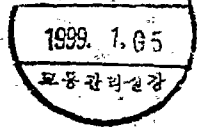
제 목 :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

1. 국유하이패 제97-070호('97. 6. 2)와 관련입니다.

2. 우리시에서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하고 있는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자인 (주)대우로부터 설계변경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였음을 통보하니,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변경내용

구 분	당 초	변 경	비 고
복개면적	48,918㎡	59,665.5㎡	증) 10,747.5
주차대수	1,262대	1,066대	감) 196
부대시설면적 (비율)	960.06㎡ (1.96%)	9,522.54㎡ (15.95%)	증) 8,562.48



나. 변경사유

○ '96. 6.29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면적이 10%이하에서 20%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내에서 부대시설비율을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변경함.

다. 변경인가 조건

○ 부대시설의 증가에 따라 무상사용기간은 검토하여 추후 결정통지
 ○ 소방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해당 소방시설은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, 소방시설의 시공·감리는 동법시행령 제40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67조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, 적용한 소방시설 등 허가사항을 변경시에는 재협의도

○ 기타 인가조건은 변동사항 없음. 끝.

서울특별시

수진처 : 중랑구청장(교통지도과·하수과·건축과장 참조), 동대문소방서장(방호과장 참조)

(제 4 안)

수 신 : 공보담당관

제 목 : 시보게재 의뢰

1. 아래와 같이 시보게재를 의뢰하니,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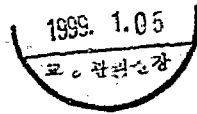
가. 게재 구분 : 고 시

나. 게재 건명 : 도시계획사업(주차장) 실시계획 변경인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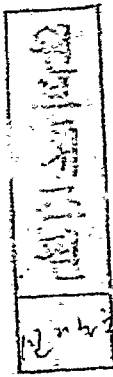
다. 법적 근거 : 도시계획법 제26조

라. 게재 희망일시 : 1999. 1.

별 첨 : 고사문 2부. 끝.



주 차 계 획 과 장



고 시 (안)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9-3 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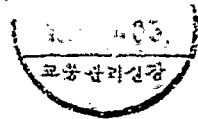
고시 제1999-3 호	도시계획	2 호
담당자	변경심사관	명주담당관
김영희	이종범	박동봉

도시계획사업(주차장) 실시계획 변경인가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-92호('92. 3.26)로 도시계획사업(주차장) 시행허가 되고, 같은 고시 제1997-47호('97. 2.28)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였기에 같은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 주차계획과(전화 : 3707-9794)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원본도시계획

1999년 1월 일



서울특별시장

가. 변경내용

구분	당초	변경	
사업시행규모	복개면적	48,918m ²	59,665.5m ²
	주차대수	1,262대	1,066대
	부대시설면적	960.06m ²	9,522.54m ²

나. 기타 내용은 변동사항 없음.